

2002년도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2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1. 30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1. 30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1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- 2002년 재난관리대상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 이상으로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,000천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코져 함.

3. 주요골자

□ 기금조성

- '98 ~ 2001년 총 기금조성액 : 73,030,820원
- '98 ~ 2001년 법정기금조성액 : 65,130,000원
- '98 ~ 2001년 기금 이자수입 : 7,900,820원
- 2002년 법정기금 예산액 : 17,433,000원

□ 2002. 기금사용계획 : 정밀안전진단비 - 15,000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재난관리기금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

-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.
- 고성군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재난관리대상 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 이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,000천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금사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그러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에 대한 사후 시행 사항과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책 등을 제출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재난 관리대상 시설 중 안전진단을 건설과에서 자체 진단은 불가능한지
- 답 : 일반적으로 용벽시설은 가능하나 안전진단의 책임소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기술을 요하는 교량, 건축물 등은 곤란함. 앞으로 자체진단에 대해서 검토하겠음.
- 문 : 2001년도 안전진단결과 지적된 부분이 있는지, 33호 국도 확·포장 구간 중 고성읍 이당리에 도로의 성토부분에 색깔 있는 블록을 임시로 설치한 곳에 통행차량 시 위험요소가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
- 답 : 안전진단결과 교량 3개소정도가 있음. 국도 33호선 확·포장공사 구간 중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철저한 행정지도로 사전 대비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